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朴芝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12
----------	-------

발의연월일 : 2026. 8. 18.

발 의 자 : 朴芝源 · 박희승 · 윤준병
문대림 · 문금주 · 염태영
이춘석 · 이수진 · 박용갑
서영석 · 권칠승 · 문진석
허종식 · 서미화 · 소병훈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관리기관이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를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5월 26일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환수금을 징수·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또한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도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각 연금법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을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와”로,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라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제20조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 할 권리는 <u>3년간</u> 행사하지 아 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 멸한다.	제25조(소멸시효) -----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와----- ----- ----- <u>5년간</u> ----- ----- -----.